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58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12.

판결 선고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ㄴ, ㄷ, ㄹ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161.7㎡를 인도하고,
나. 8,9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7. 20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7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권순향

별지